제587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

2025. 8. 8.

국 무 조 정 실
규 제 조 정 실

Ⅰ. 회의개요

○ 일　　시 : ‘25. 8. 8. (금) 14:00 ~ 16:00

○ 출석위원(12명)

- **경제분과위원장** (주재)

- 민간위원 : 강영철, 고동수, 박선규, 박익수, 오균, 우윤석, 이민창, 이인호, 정진경 위원

- 정부위원 : 국조실, 공정위

Ⅱ. 상정안건

구분	의안번호	상정기관	의 안 명	구분
①	2025-297	공정위	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추진 결과	보고
②	2025-193	국조실	규제샌드박스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품목 확대(안)	심의

Ⅲ. 회의 결과

1. (보고)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추진 결과(공정위, 2025-297호)

□ **보고내용** (요약)

○ (**업무개요**) **공정위는 시장경쟁**을 **제한**하는 각종 **규제**를 **개선***함으로써 **혁신성장** 및 **공정경쟁 기반 조성**

* ▲(근거)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4조 ▲(정비실적) '09~'24년 총 349건

- 독과점 시장의 구조개선 등 **경쟁 촉진**으로 **민생안정 유도** 및 **기업 규제 부담 완화**를 통한 **경제활력 제고**를 위하여 **과제 발굴·개선안 마련**

○ (**개선 과제**) ❶LPG **셀프 충전 허용**, ❷소기업 **공동상표** 제품 **인증면제 확대**, ❸소상공인 **협업사업 지원조건 완화**, ❹**반려동물**용 **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**, ❺**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신청 자격 확대**

- ❻**위험물안전관리자 신고 편의 개선**, ❼총포화약법상 **신체검사 명확화**, ❽노인복지주택 내 **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**, ❾**폐기물 재활용**업 허가요건 중 **수집·운반 차량기준 명확화**

□ **논의사항**

○ 추후 보고시 **조정·협의**가 **미완료된 과제**도 **포함**해 **보고 필요**

□ **심의결과 : 원안대로 접수**

2. (심의) 규제샌드박스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품목 확대(안)(국조실, 2025-193호)

□ **보고내용** (요약)

○ **제583회 규개위**(5.16일)의 일반의약품 **스마트 화상판매기 부가조건 변경**에 관한 **심의** 결과*, **계속심사**로 **의결**한 **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품목 확대(안)**에 대하여 **의견 청취**를 토대로 **재심의**

*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의 사업실적 및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·검토하고 화상투약기가 설치된 약국과 의사, 실증업체 등의 추가적인 의견 청취를 요청

○ **(과기부) 실증 수행 내용**이 **적정**하고 스마트 화상판매기 **이용자** ('25.2월 기준 약 16,000여명) 중 **안전사고** 및 **손해배상 사례**도 **없으며**

- **화상투약기 설치 약국**과 **의사 의견 청취*** 결과, **스마트 화상판매기**는 **환자**의 **편의성·접근성 제고**와 복약지도가 불필요한 **일반의약품**인 점을 고려시 **판매 가능 의약품 확대**가 **필요**

○ **(복지부)** 스마트 화상판매기는 **국민**의 심야·공휴일 **의약품 접근성 제고**에 **기여**하므로 확대 필요

- 다만 **목표 대비 낮은 설치 실적, 설치 지역 편중** 등은 **개선**이 **필요**한 것으로 검토

□ **논의사항**

○ 이해관계자 입장뿐만 아니라 실증특례 **제도 도입 취지**인 **국민 편익 증진 관점**에서 스마트 화상판매기 **품목 확대 검토** 필요

○ **품목 선정 기준**은 **원격 복약지도**의 **위험성** 또는 **부작용 여부 등**을 **기준**으로 **판단**할 필요

○ 판매 **허용품목 확대 후, 과기부**는 **화상판매기**의 **이용자 수**와 **수익 변화 추이**를 **면밀히 관리**하여 **상관관계 분석**이 필요

□ **심의결과** : 사업자가 신청한 **스마트 화상판매기 판매 가능 약효군**(13개) 중 **복지부**가 **수용한 5개 약효군에** 해당하는 품목과, **약대 교수 전문가 그룹**의 **자문 결과** 등을 토대로 **총 82개 품목**을 **추가 판매 허용**하는 **수정안으로 의결**